## 협회등록 주간사 계약서

발 행 회 사:

京畿道 平澤市 芝制洞 33 (株)이 이 피 에 스 代表理事 李 鎔 漢 외1

주 간 사 회 사 :

科登特別市永登浦區汝矣島洞34-7 東遠證券株式會社 代表理事 社 長 金 容 圭 주식회사아이피에스(이하 "갑 "이라 한다)과 동원증권주식회사(이하 "을 "이라 한다)는 "갑 "의 협회등록을 위한 주간사 계약을 다음과 같 이 체결한다.

- 제 1 조 (계약의 내용) "갑 "으로 "을 "갑 "의 협회등록 주간사로 선정하며, "을 "에게 "갑 "의 협회등록을 위한 주식의 인수를 의뢰 한다. "을 "은 "갑 "의 협회등록 주간사로서 "갑 "의 협회등록을 위한 주식을 인수하며 "갑 "의 협회등록을 추진함에 있어 주간사 업 무를 수행한다.
- 제 2 조 (경영관리실태, 재무 및 회계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 및 점검) "을"은 본 계약후"갑"의 협회등록 추진을 위해"갑"의 경영 관리실태, 재무 및 회계관리실태(이하 경영관리실태등)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협회등록시점에서의 등록예비심사청구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 3 조 (자료의 제출) "을 "은 제2조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자료의 제출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조직도,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 2. 회계규정에 관련된 자료
  - 3. 반기별 자금조달 및 사용실적 현황 자료
  - 4. 반기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 5.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자료
  - 6. 기타 경영관리실태, 재무 및 회계관리실태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

- 제 4 조 (현지조사) "을 "은 제2조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의 사무소 및 공장에 임하여 관련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 5 조 (등록요건 관련 권고) "을 "은 제2조에 의한 경영관리 실태 등의 점검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 관계회사와의 거래 및 경영관리체제의 정비 등 협회등록 요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1. 신규사업의 진출, 영업의 양·수도 등 기업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 가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계획을 결정한 경우
  - 2.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이상으로 과도하게 특수관계자와의 거 래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
  - 3. 등록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경영계획을 결정한 경우
  - 4. 기타 협회등록기업으로서의 경영관리 체제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 6 조 (계약해지) ①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을 "의 요구 또는 권고 등에 "갑"이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에 중대한 문 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을 "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갑"의 협회등록을 추진하 지 않거나 "을"이 인수단 참여제한 조치 등 협회등록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이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 "을 "은 계약기간 중 "갑"에게 제공한 협회등록추진관련 자문에 대한 대가를 자문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 7 조 (청년이용제한 을 "은 " 갑 "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점검 등으로부터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 갑 "의 협회등록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 ② "을"이 정보를 누설하거나"갑"의 협회등록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갑"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을"은 이를 배상한다.
- 제 8 조 (계약의 변경) 이 계약은 관계법령 등의 개정이나 기타 변경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 " 갑 "과 " 을 "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 9 조 (이의 처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관례 또는 " 갑 "과 "을 "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한다.
- 제 10 조 (불성실 자료의 귀책) ① 제4조에 의한 장부, 서류, 기타 물건 열람시 "갑"이 고의로 누락시키는 경우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조 사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은 "갑"이 진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은 "갑"이 진다.
- 제 11 조 (관할 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12 조 (계약 기간)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협회등록을 위한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 갑 ", "을 "이 작가 1통씩 보관한다.

2000 년 2 월 ៛일

갑 : 京畿道 平澤市 芝制洞 33

(株)아이피에스

代表理事 李鎔漢引1



음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34-7

東遠證券株式會商

代表理事金容